

인권지킴이 활동계획

2025년



나원호요양원

“1%를 위한 품격있는 섬김”을 위한, ‘25년 인권지킴이 활동계획

I 추진 목적

체계적인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인권 존중과 안전한 요양원 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II 추진 근거

-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지표 「인권지킴이」 활동’ 권고

III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5.1월 ~ 12월
- 활동명 : ‘인권지킴이 활동’
- 활동분야 ;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 피해 구제 / 보호 등을 위한 제반 활동

○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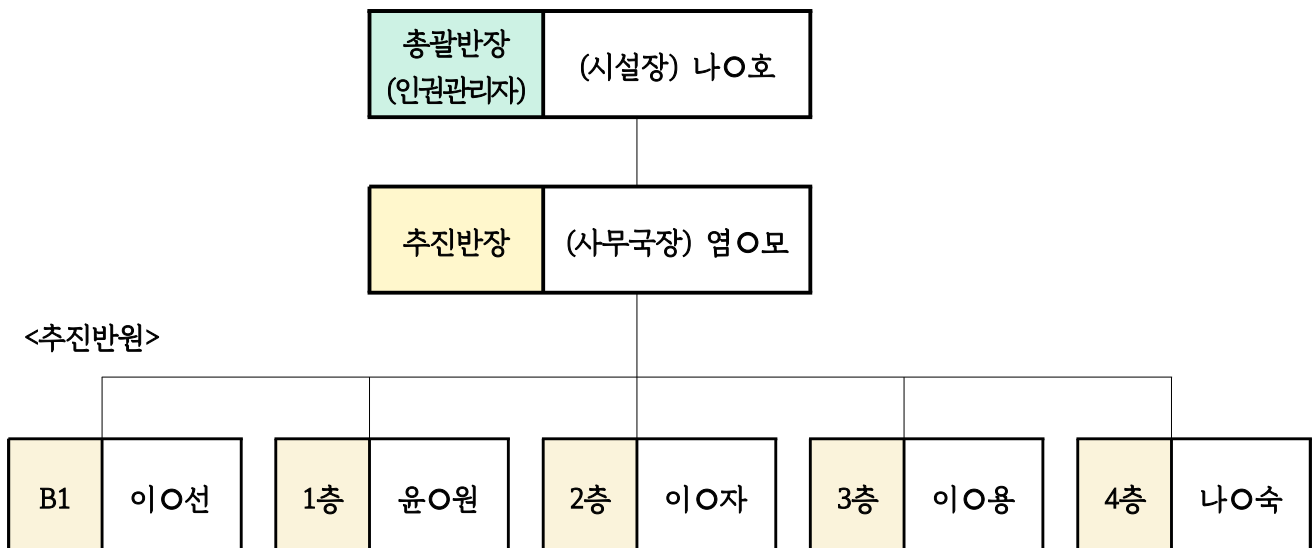
(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 등에 대한)

-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 인권침해 발생 시 1차 상담 및 시설장 통보
- 인권침해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 신고체계 구축 및 현장 지도 등

IV 세부 추진계획

1 인권지킴이 추진반 구성 · 운영

<인권지킴이 추진반 조직도>



<인권지킴이 추진반 역할과 임무(활동사항)>

-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등 자체점검
- 인권침해 발생 시 1차 상담 및 필요사항 조치
- 인권 교육 및 신고체계 구축

2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 (주기) : 월 1회
- (방법) : 인권지킴이 반원별 담당 구역의 직원 및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여부나 갈등상황에 대한 상담 및 관찰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분야>

점검 분야	주요 점검내용
시설 환경분야	• 시설내 각종 제도나 설비 등 제반 환경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점검
서비스 제공 과정	• 어르신과의 면담 또는 일상 대화 과정 등을 통해 서비스 전 과정을 통해 종사자로부터의 언어, 태도, 행동 등으로 인권침해가 있는지 점검
인권 환경분야	• 종사자나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할 사항이 발생가능한지 여부 • 종사자나 입소자에게 인권보호 교육이나 학대예방 등을 교육하는지 여부 • 학대 발생시 신고의무사항이나 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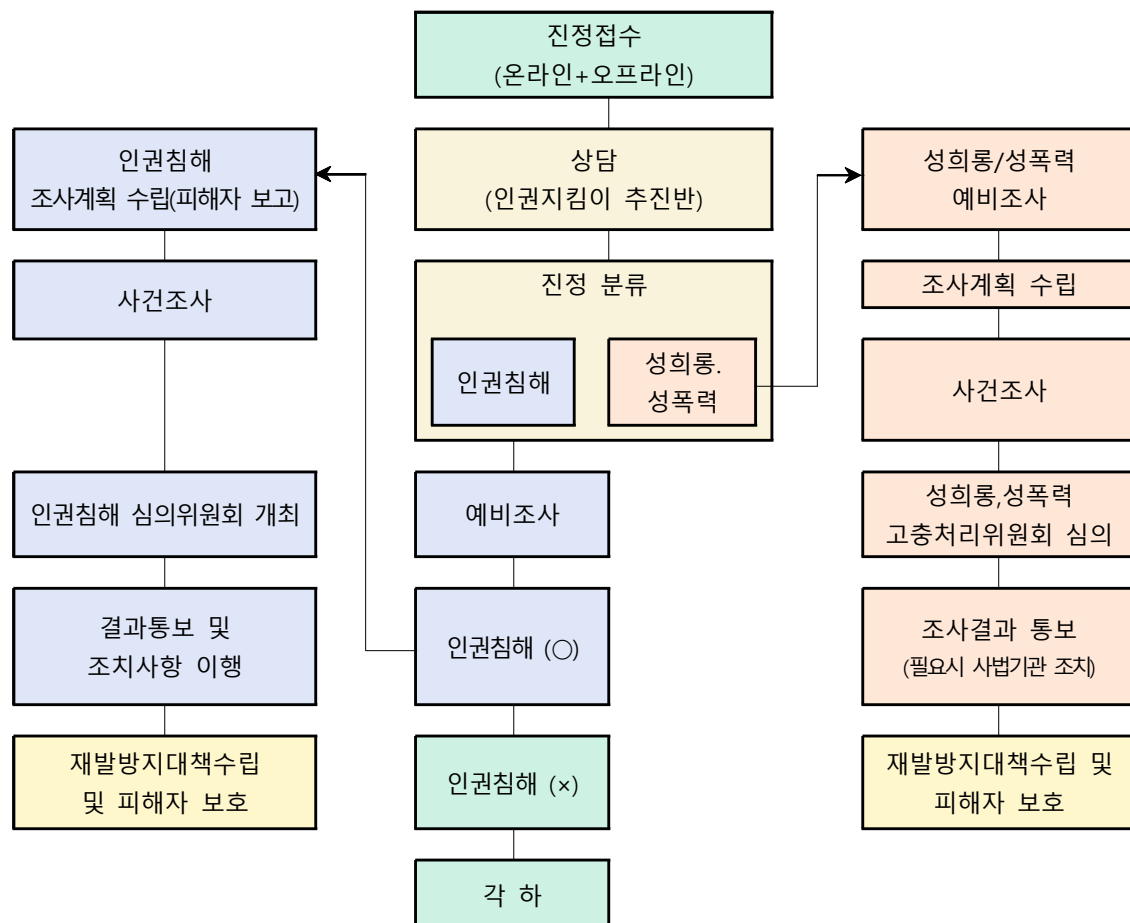
- (결과) : 「인권지킴이 추진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도출

3

인권침해 발생시 상담활동 등

- (시기) : 인권침해 발생 시
- (대상) :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
- (발생유형) : 노인학대, 갑질,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등
- (상담방법) : 피해자와 개별접촉하여 최초 상담을 통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해 구제내용 및 절차 등을 안내 실시
- (기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익명처리 및 비밀보장 철저 실시
- (조치사항) : 피해사실 확인되면, 「인권지킴이 추진반 실무협의회」에 통보하여 조치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실시

<피해구제절차>



<인권 교육 실시>

- (교육 주기)

-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연 1회
-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 분기 1회(종사자 & 어르신)

- (주요 내용)

- 종사자 인권 침해 시 대응방법 및 구제절차 등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사항
- 노인인권보호 및 권리사항
- 노인학대 및 예방 활동과 권리구제(신고절차 등) 방법 등

- (교육방법 등)

- 인권 보호 및 침해시 구제방법 등 일반사항 : 자체교육 실시
※ 교육자료 작성·배포
- 노인학대 신고의무 관련사항 : 보건복지부 사이트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수료증 제출 요구

<인권침해 시 신고체계>

- (종사자 인권침해 관련)

①행위자에게 행위 중지 요청 → ②자리에서 회피 → ③주변 도움 요청 → ④관련 상황을 시설장(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 및 도움 요청 → ⑤법률 및 심리상담 실시 및 업무의 전화 조치 → ⑥필요시 경찰 및 외부기관 협조 요청 및 책임보험 문의 신청 등

- (어르신 인권침해 관련)

①행위자에게 행위 중지 요청 → ②주변 도움 요청 → ③시설장(또는 사무국장이나 요양보호팀장 등)에게 도움 요청 → ④사실관계 조사 후 조치 → ⑤앞의 단계(④)를 생략하고 곧바로 노인전문보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됨 → ⑥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사항 조치 이행

V 향후 계획

- 가. '25년 인권지킴이 운영계획 공지 (25.2월)
- 나. 인권지킴이 심의위원회 및 추진반 구성 운영('25.2월)
- 다. 인권지킴이 회의 개최('25.3월)
- 라. 분기별 인권지킴이 회의 실시('25.2분기부터)

VII 행정사항

- 가. 인권지킴이 추진반 등 구성('25.2월)
 - － 인권지킴이 심의위원회 포함
- 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 －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 '25.4월
 - －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 25.3월 및 6월
- 다. 인권지킴이 활동결과 보고
 - － 분기별 인권지킴이 회의시 보고.
- 라.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 : 붙인 점검표 참조

붙임 :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표 1부. 끝.

[붙임]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

점검일자 : '25. . .

점검자명 :

연번	점 검 사 항	결과	
설비 등에서의 인권 취약		그렇다	아니다
1	의복, 기저귀 교체 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4	방문 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5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습도계 비치 확인)		
6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서비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	밀치거나 때리고 고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8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위협한다		
9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10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11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12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13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건강상태 고려)		
15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16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17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18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9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인권환경 개선			
20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21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2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3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 발생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		

※ 작성방법 : 결과는 ○, × 표기